

스카우트 장학기금 운영 규정

(제13차 개정 2018. 10.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카우트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한국스카우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에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기금) 본 장학기금은 스카우트 장학기금과 유지의 성금으로 한다. (개정 80. 4. 1.)

제3조(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본 연맹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장 부총재 (개정 82. 3. 27.)
2. 위원 6명 이상 (개정 82. 3. 27.)
3. 감사 1명
4. 간사 1명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년2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의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0. 2. 20.)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 처리하고 본 연맹 이사회 및 전국총회에 보고 한다. (개정 90. 2. 22.)

1.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사업보고 및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증액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선발 및 수여에 관한 사항
5. 장학금의 지급액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중앙본부의 별도 계정을 설치 운영 관리하되 그 과실로써 운영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자) 본 위원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1. 한국스카우트연맹 포상규정에 의하여 선발되는 명예스카우트 (개정 90. 2. 22.)
2. 지방·특수연맹 연맹장 및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모범적인 대원 (개정 09. 11.

13.)

3.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 (개정 18. 10. 31.)
4.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18. 10. 31.)
5. 재난에 따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설 18. 10. 31.)
6. 스카우트 회원국 청소년 (신설 18. 10. 31.)

제7조(추천 절차) 장학스카우트의 추천은 당해 연도 장학스카우트 배정인수 이상을 다음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04. 12. 16.)

1. 중앙본부는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2. 지방·특수연맹은 지방명예회의 심의를 거쳐 연맹장이 추천한다. (개정 09. 11. 13.)

제8조(장학스카우트 수와 지급액) 장학스카우트 수와 지급액은 장학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9조(지급 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신청절차) ① 스카우트 장학생인 경우 지방·특수연맹 연맹장 및 사무총장은 장학스카우트로 추천하는 대원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1. 장학스카우트 지원서
 2. 지방·특수연맹 연맹장 추천서 (개정 09. 11. 13.)
 3. (삭제 18. 10. 31)
 4. (삭제 04. 12. 16.)
 5. 활동계획서(대학생 부문의 경우) (신설 18. 10. 31.)
- ② 비스카우트 장학생인 경우 연맹에서 정한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개정 18. 10. 31.)
1. (삭제 18. 10. 31)
 2. (삭제 18. 10. 31)
 3. (삭제 18. 10. 31)
 4. (삭제 18. 10. 31)

제11조(장학금의 수령) 장학스카우트로 선발된 대원은 다음 서류를 중앙본부에 제출하고 장학금을 수령한다.

1. 삭제 (개정 07. 12. 20.)
2. 영수증 1통

제12조(장학금 지급중단) 장학스카우트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스카우트 활동을 중단하였을 때
2. 퇴학, 정학,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스카우트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 하였을 때

제13조(장학스카우트의 신상사유 보고 의무) 장학스카우트 또는 소속대의 육성단체대표와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장은 장학스카우트의 수학 상황에 관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하고 전학, 전과, 휴학, 정학 또는 스카우트 활동의 중단 및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부 칙

1. (적용) 장학금 운영 시행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및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위원의 임기)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최초 임원의 임기는 1978년도 전국총회일까지로 한다.
3. 이 규정은 1976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78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